

「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2년 01월 07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2년 1월 17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73회 평창군의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
(2022년 1월 17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안전교통과장)

가. 제안이유

「보행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에 따라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(안 제2조제2항)
- 평창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·조정사항 (안 제2조제2항1호~3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남섭)

○ 본 조례안은
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조례안 주요내용은

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에서는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(이하 "지역위원회"라 한다)를 두도록 하며

다만,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
○ 이에 조례안은 기존 "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"에 지역위원회 기능을 추가하고자 개정 취지가 있으며,

‘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’에 추가되는 기능은

지역계획에 관한 사항,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,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.

○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위원회는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제1항의 단서에 따라 평창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기능)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2조(기능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위원회는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평창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.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